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지원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732

발의연월일: 2024. 7. 15.

발 의 자: 박지원・인요한・이기헌

이성윤ㆍ허 영ㆍ조 국

이개호 · 소병훈 · 김용민

김준형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대한민국의 2023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약 9%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기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, 이용, 보급에 관한 촉진법을 두고 있는 상황임.

그런데 대한민국의 낮은 재생에너지 비중 원인 중 하나로 과도한 입지규제가 지적됨. 중앙정부 차원의 기준 없이 각 지자체별 조례로 관련 이격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임. 다만 농어촌 지역의 경우 주민 주거권 및 자연보호 측면에서 이격거리에 대한 규제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에 수도권과 비수도권, 도시 지역과 농어촌 지역 간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이격거리에 대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기준 정립이 중요하다 할 것임.

이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 이격거리 설정에 대한 법률상 기준을 명확히 하여 공공복리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합리적인 이격거리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신재생에너지 이용과 보급 및 촉진을 용이하게 하고자 함(안 제27조의3 신설).

법률 제 호
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7조의3(태양광 및 풍력설비의 이격거리 기준) 신·재생에너지 설비 중 태양광 또는 풍력을 이용하는 설비의 입지에 관하여 특정시설로부터 이격거리를 설정하는 경우, 지역갈등 최소화 등 공공복리에 필요한 경우에 그 범위와 이격거리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27조의3(태양광 및 풍력설비의
	<u>이격거리 기준) 신·재생에너지</u>
	설비 중 태양광 또는 풍력을 이
	용하는 설비의 입지에 관하여
	특정시설로부터 이격거리를 설
	정하는 경우, 지역갈등 최소화
	등 공공복리에 필요한 경우에
	그 범위와 이격거리 등의 구체
	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
	<u>다.</u>